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5. 30.

발 의 자 : 김정재·김영호·변재일
오세정·김민기·김현권
서영교·안호영·표창원
김석기·박덕흠·박명재
송석준·홍철호·정운천
이용주·최경환^(평) 의원
(17인)

제안이유

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.

이에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토록 법령을 마련하였으나, 이 제도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.

따라서,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민 스스로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

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4920호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4920호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(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법률 제14920호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(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